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 (안 제4조)

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5조)

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보건소 보건위생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
북구 어린이”를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제1호 중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를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생·영양관리”로, “보급·운영”을 “보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를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식재료”로, “위생적 관리”를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를 “구청장이 급식소의”로 한다.

4. 시설유형·대상자별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조에 따라 <u>성북구 어린이</u>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 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u>어린이급</u> <u>식관리지원센터</u>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u>어린이 식생활</u> <u>안전관리 특별법</u>」(이하“<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 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 다. 2. “<u>어린이 급식소</u>”란 (이하 “<u>급</u> <u>식소</u>”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u> <u>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조례</u>는 「<u>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 조 및 「<u>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u> <u>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u> <u>법률</u>」 제5조에 따라 <u>서울특별</u> <u>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u> ----- <u>어린이·</u> <u>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 제2조(정의) ----- -----. 1. ----- -----이하 “<u>어</u> <u>린이식생활법</u>”----- ----- ----- --. 2. “<u>취약계층</u>”이란 「<u>노인·장</u> <u>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u>

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
 -----.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 -----

3. 위생·영양관리 -----
 -- 보급

<신 설>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4. 시설유형·대상자별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삭 제>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
--

5. 식재료 -----

-- 위생관리 지도점검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8. -----
-- 구청장이 급식소의 ---

는 사업 <u>제5조(지원대상 등) 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어린이 급식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u><신설></u> 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제6조</u> (생략) <u>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u>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u>제8조 ~ 제10조</u> (생략)	<u>제6조(지원대상 등) ①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u> ----- -- 제7조----- -----. ② (현행과 같음) <u>제9조 ~ 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